

의안번호	2210495
의 퇴 인	이종배 의원
회 답 일	2025. 7. 1.
추계번호	25A2903

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2조의4(명문장수 기업의 요건)	○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을 완화함(제1항 및 제2항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62조의4(명문장수 기업의 요건)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안 제62조의4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이 완화되면 명문장수기업의 수가 증가하고 관련 재정사업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- 먼저, 개정안은 명문장수기업의 업종을 확대하고 있음
 - (현행 제외 업종) 건설업, 부동산업, 금융업, 보험 및 연금업,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등
 - (개정안의 제외 업종) 일반 유흥 주점업, 무도 유흥 주점업,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, 그 외 기타 여신 금융업(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단기 자금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 등
- 또한, 개정안은 주된 업종 유지의 기준을 완화하고 있음
 - (현행) 주된 업종의 변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함
 - (개정안)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와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된 업종의 변경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사업을 계속 유지한 것으로 봄

- 개정안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이 완화되면 해당 기업의 수가 증가하고 관련 재정지출이 확대될 수 있으나, 개정안의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어(제2항) 그 수를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음
- 현재 명문장수기업의 수는 제조업 47개, 도소매업 2개, 출판업 2개,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2개임
 - 참고로, 중소벤처기업부의 명문장수기업 관련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운영, 명문장수기업 홍보 및 네트워킹 지원 등이 있음

[표 1] 명문장수기업 관련 주요 재정사업 현황(중소벤처기업부)

(단위: 백만원)

세부사업 (내역)	회계기금 (소관)	2022 결산	2023 결산	2024 결산	2025 예산
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 (중소기업중앙회보조)	일반회계 (중소벤처기업부)	361	328	352	321

자료: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윤주철	권아영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윤주철	02-6788-4655	yjc@nabo.go.kr